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전통기술 종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Recor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s: Focusing on Traditional Craft Techniques

정현지(Hyeonji Jeong)

E-mail: jhg70213@gmail.com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졸업



논문접수 2026-07-13

최초심사 2026-07-27

게재확정 2026-08-10

ORCID

Hyeonji Jeong
<https://orcid.org/0009-0009-7712-5526>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정현지의 석사학위논문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전통기술 종목을 중심으로」(2026)을 요약·수정된 것임.

초 록

본 연구는 전통기술 종목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검토를 통해 보유자 기록물의 정의와 범주를 정립하고, 공공기관의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및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무형유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보유자 기록물은 전승 계보와 작업 철학, 기술 변용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기록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원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① 구술기록을 통한 결락 기록 보완, ② 작품 제작 공정별 기록화 체계 마련, ③ 무형유산 전승자 대상 기록관리 교육 지원, ④ 전수교육관·지자체·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연계형 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archival records created and maintained by holders of traditional craf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nd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records management. To this end, the definition and scope of ICH holder records were establish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current state of ICH documentation projects and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in public institutions was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ICH hold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despite constituting a significant resource for documenting transmission lineages, working philosophies, and processes of the evolution of techniques, holder records are not being managed systematically, owing to low levels of records management awareness and insufficient support personnel.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s four strategies: (1) supplementing missing records through oral history interviews, (2) establishing a documentation framework for each stage of the production process, (3) providing records management education and support for ICH transmitters, and (4) develop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involving training centers, local governments,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Keywords: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 개인기록관리, 전통기술, 무형유산 기록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Records of ICH Holders, Personal Archiving,
Traditional Craft Techniques, Documentation of ICH

<https://jksarm.koar.kr>

www.kci.go.k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무형유산은 한 사회가 계승·발전시켜 온 전통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그 사회와 구성원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동체 일원이 무형유산을 어떻게 향유하고 전승해왔는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무형유산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고령화, 정보화 등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는 무형유산의 전승 기반을 약화시켰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전승 보급 활동이 미흡하거나 활성화가 어려운 경우, 이를 전승취약종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개인이나 단체가 장기간 존재하지 않는 국가무형유산의 경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2024년 기준 이러한 전승취약종목은 25종목,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4종목으로 파악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승취약종목 25종목 가운데 20종목이 전통기술 종목에 속하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4종목이 모두 전통기술 종목이라는 점이다. 이는 전통기술 종목이 타 종목에 비해 전승 구조가 취약하고, 후계자 단절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기술은 오랜 시간 축적된 장인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전승되어 왔으나, 그 전승 구조가 개별 장인의 기억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기록관리의 부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 결과, 보유자의 기록은 생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고, 사후에는 이를 승계하여 관리할 주체가 부재한 채 흩어지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기술 종목은 다른 무형유산 종목에 비해 기록 관리 공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문화재청, 2022)을 수립하여, 무형유산의 기록화를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무형유산 보호제도에서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는 기·예능의 전승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는 『문화재관리연감』(문화재관리국, 1988)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보유자의 기·예능이 쇠퇴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관련 자료를 통하여 기·예능을 전수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기록물을 무형유산의 원형 유지 보존을 위한 중요 자료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무형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그것의 전승과 의미 구성에는 전승 주체의 지식과 경험, 실천적 해석이 긴밀히 작용한다. 실체가 있어 식별이 가능한 유형유산과는 달리, 무형유산은 사람을 매개로 구현되며 그 모습은 실현되는 순간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의 예술과 기술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경험, 그리고 기억을 함께 보존하는 것을 뜻한다(함한희,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무형유산의 전형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유산을 살아 있는 경험으로 구현해 온 보유자의 삶과 맥락을 기록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형유산 보유자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는 기록학계의 무형유산 관련 연구, 무형유산학계의 무형유산 기록화 연구,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기록학계에서는 특정 종목의 전승 구조와 실연 과정에 주목하여 기록화 방식과 대상을 제시했다. 권소현과 김익한(2010), 정다솜(2019)은 각각 강릉단오제, 농악, 판소리를 사례로 기록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기록화 논의가 단일 종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보유자의 생애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기록화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형유산학계에서도 기록화는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의미와 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정수진(2006)은 기록을 무형유산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제도적 권위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후 무형유산 기록화 논의에서 중요한 이론적 전환점이 되었다. 위주영(2006)과 백주현과 김순희(2010)는 각각 전라남도와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기록화 사업의 현황을, 이재필(2010)은 국가 차원의 무형유산 기록보존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혜선(2023)은 옹기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기록화 사업이 표면적 기술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심화된 기록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강석훈(2024)은 전승공동체 종목 등장 이후의 새로운 기록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유자 기록물은 보유자 개인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지니기에 개인기록의 특성과 관리 방식을 따르는 동시에, 전통기술 종목의 보유자와 미술작가는 작품 제작 활동과 기록관리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로는 최인혁과 이영학(2015), 오명진(2017), 김숙연(2018)이 있으며, 미술작가의 기록관리를 다룬 연구는 정공주와 박주석(2014), 장지영(2017), 김송이와 설문원(2024)이 있다. 해당 연구들은 개인기록과 미술작가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집·평가·정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무형유산 기록화 연구가 종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승 주체인 ‘보유자’의 기록 생산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보유자 개인의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고 관리되며, 그것이 무형유산의 전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이와 관련해,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는 수집기관의 관점에서 “어떤 유형의 개인기록을 어떻게 들여와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직 기록물관리기관에 편입되지 않은 현장의 개인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생산·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유자 면담을 통해 추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미술작가와 보유자는 창작을 수행하는 예술적 주체로서, 자신만의 미감과 기술을 기록으로 남긴다. 그러나 보유자의 기록은 ‘무형유산의 전승’이라는 제도적·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논의를 수용하되, 무형유산 전승 체계 내에서 ‘무형유산 보유자’라는 특수한 개인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현황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무형유산 보유자의 기록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향후 기록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무형유산의 7개 범주(전통기술, 전통 공연·예술,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 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 놀이·무예) 가운데 전통기술 종목의 보유자로 한정하였다. 전통기술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 전승이 개인의 숙련과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후계자 단절 문제로 전승의 지속성이 특히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기술 종목의 보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기술과 삶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무형유산의 개념을 정리하고 무형유산의 전승 체계 및 보유자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이후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정의 및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무형유산 기록관리 현황을 검토하였다. 「무형유산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임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와 함께 각 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대상자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검토한 후, 무형유산 기록화 업무를 별도로

분장한 6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기관에 한정하여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은 시·도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의 추진 방식과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 면담 대상자 구성(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	소속	업무	면담 일자	면담 방법
업무 담당자 A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2025.11.19. 2025.11.21.	전화
업무 담당자 B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	2025.11.18. 2025.11.25.	전화
업무 담당자 C	가 광역자치단체	시·도무형유산 기록화	2025.11.25.	전화
업무 담당자 D	나 광역자치단체	시·도무형유산 기록화	2025.11.25.	전화
업무 담당자 E	다 광역자치단체	시·도무형유산 기록화	2025.11.25.	전화
업무 담당자 F	라 광역자치단체	시·도무형유산 기록화	2025.11.25.	전화
업무 담당자 G	마 광역자치단체	시·도무형유산 기록화	2025.11.25.	전화
업무 담당자 H	바 광역자치단체	시·도무형유산 기록화	2025.11.25.	전화

다음으로 보유자가 실제로 어떠한 기록을 생산·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맥락과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통기술 종목 보유자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기술 종목의 무형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전수교육관을 통해 면담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전수교육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로,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입주하여 작품 제작과 전수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습·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에 전수교육관을 보유자와의 직접적인 연락 창구이자, 전승 활동과 기록관리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라 판단하여 면담 대상자 섭외의 주요 경로로 활용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세부 정보는 <표 2>와 같다. 면담 요청 시에는 연구의 취지와 진행 방식을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준비한 면담지를 토대로, 현장에서의 응답에 따라 추가 질문을 이어가는 반구조화된 방식을 취했다. 또한 면담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보유자 기록물’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보유자들은 대체로 기록을 텍스트 기반의 일반문서 형태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기록의 범주에 사진, 영상, 작업 도구, 스크랩 자료, 전시 팸플릿, 녹음본, 이메일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아울러 면담 대상자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면담 시, ‘기록’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자료’, ‘물건’ 등의 표현을 혼용하였다.

〈표 2〉 면담 대상자 구성(보유자)

면담 대상자	연령	면담 일자	장소	시간
보유자 A	80대	2025.08.10.	공방	145분
보유자 B	60대	2025.08.16.	전수교육관	116분
보유자 C	60대	2025.08.27.	전수교육관	129분
보유자 D	70대	2025.09.05.	자택	68분
보유자 E	70대	2025.09.19.	공방	62분
보유자 F	70대	2025.09.24.	전수교육관	105분

보유자 6명 외에도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기록관리도 함께 보조해주고 있는 가족, 제자, 전수교육관 직원과 비공식 면담을 수행하였다. 비공식 면담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구조화된 대화로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관찰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다(Hatch, 2002/2008, 156-158). 이들과의 면담은 보유자의 진술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나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보조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 방식은 보유자 면담 시 동석하거나 면담 전후에 간단한 전화나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녹음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문 인용 시 “(보유자 C의 제자)”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AI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활용하여 1차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연구자가 여러 차례 음성 파일과 대조하며 정확성을 검토·보완하였다. 이후 완성된 전사 자료는 오픈소스 질적 분석 도구인 TAGUETTE를 이용해 귀납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귀납적 분석은 개별적인 진술을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엮어내는 작업으로,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탐색하는 것이다(Hatch, 2008). 질적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현상에 대한 기존 이론이나 연구 문헌이 제한적일 때 사용된다(Hsieh & Shannon, 2005, 127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분석 방법으로 1차 코딩과 2차 코딩의 두 단계를 거쳐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1차 코딩 단계에서는 분석의 ‘뼈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우선 자료의 의미나 핵심 요지가 드러나는 문장을 중심으로 괄호 표시나 밑줄 긋기 등의 방식으로 세그멘팅(segmenting)을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할 자료를 선별하였다. 이후 세그멘팅과 동시에 단어나 짧은 구절 형태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이후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을 단어나 짧은 구절 형태로 코딩하여 초기 코드 체계를 구축하였다. 2차 코딩 단계에서는 1차 코딩에서 도출된 코드들을 비교·검토하여 유사 코드들을 통합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해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김영천, 2016, 502-535). 최종적으로 425개의 코드가 생성되었으며 주요 면담 결과는 4장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무형유산과 보유자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당시에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규정하였다. 무형유산 보호 제도는 50년 넘게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용되다가 「문화재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던 무형유산 관련 내용이 분법됨에 따라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23년,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이 되었다. 이는 기존의 문화 ‘재(財)’라는 용어를 국가 ‘유산(遺産)’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였다. 「무형문화재법」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으로 개정되었다. 그에 따라 창작 행위의 결과물이자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재화적 가치를 연상시켰던 기존의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는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변화된 용어와 함께 법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반영해 무형유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된다. 이는 무형유산이 단순히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유산으로, 전승주체의 끊임없는 재창조 과정을 보여준다(김용구, 2025).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무형유산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세대를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 전승을 이어온, 살아있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무형유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이러한 무형유산의 범주를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와 같이 7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중 특히 가치가 뛰어난 것은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 이때 국가무형유산이 아닌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지정 주체와 관리 체계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은 국가유산청이, 시·도무형유산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정과 관리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의 무형유산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50여 년간 인간문화재라 불리던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도제 방식의 전승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 무형유산 보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형의 유산이 유한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 전승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전승은 [보유자 - 전승교육사 - 이수자]로 이어지는 인적 전승체계에 기반하며, 이 가운데 핵심 주체인 보유자는 ‘전수교육’과 ‘공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유산의 지속을 실질적으로 이끈다. 현행 「무형유산법」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보유자는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해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유산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수교육’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실시하는 교육으로, 무형유산의 기·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이다. 그리고 유산의 ‘공개’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통기술과 같은 기능 종목의 경우, 완성된 공예품을 최소 3일 이상 전시하는 방식으로 유산의 공개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유산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75.6세, 전승교육사의 평균 연령은 64.8세로 나타났다(국가유산청, 2025). 이 통계는 무형유산 전승 주체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전승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실제로 다수의 전통기술 종목에서 후계자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무형유산은 보유자 고령화와 이수자 부재로 단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무형유산 163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나주의새갓나이, 백동연죽장, 바디장, 배첩장, 누비장)은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보유자가 없다. 특히 위의 5개 종목은 모두 전통기술 종목으로, 사실상 단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전승자의 고령화와 전승 공백이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보유자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전승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 충분히 남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전승 주체의 삶과 기술, 전승 과정에서 형성된 지식이 기록으로 축적·관리되어 이후의 전승 논의와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정의 및 범주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무형유산 기록물의 개념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김지희(2018)는 기록학에서 말하는 기록물의 정의를 빌려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정의하였고, 임예림(2011)은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 중에 생산된 관련 기록 전부를 무형문화재 기록으로 보았다. 한희정 외(2018)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무형유산의 관리·보존·이용 가치가 있는 모든 기록물로 정의내렸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을 무형유산의 전승을 실천하거나 담당해 온 보유자의 전승 활동과 경험, 생애사 및 전수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모든 형태의 기록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구술기록, 문서, 사진, 영상, 메모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은 전승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무형유산의 전승 맥락을 설명하고 그 실천 양상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유자는 기·예능을 전승하는 실천자이자, 일정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직업인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인,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전승자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지닌다. 따라서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은 보유자의 전승 지식과 이에 대한 습득·실연·전승 과정의 전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표 3>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록화 대상 및 수집 범위를 비교·분석하여, 보유자 기록물의 범주 설정을 위한 이론적 틀로 삼았다.

<표 3>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무형유산 기록화 대상 및 수집 범위

구분	연구자					
기록화 대상 및 영역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윤지희 (2016)			권소현, 김익한 (2010)	정공주, 박주석 (2014)
	무형문화재의 역사	역사			역사기록	사적 활동
		지역				
		사회·민속				
	분야별 무형문화재의 전승양상	실연활동	음악		의식	작품 활동
			연회(무용)		의식 준비	
			놀이·의식			
	놀이·의식	전승활동	보유자(단체)		기예능보유자	공적 활동
			전수교육		전수	
			연구 활동		유관사업 기록	
유네스코 기록						

이들 선행연구는 각각 무형문화재, 농악, 강릉단오제, 시각예술 작가를 대상으로 기록화 및 기록물 수집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10)는 무형문화재의 기록 범위를 무형문화재의 역사, 분야별 무형문화재의 전승양상, 전승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윤지희(2016)는 국립문화재연구소(2010)의 기록 범위를 농악의 기록화 영역에 적용하여 이를 농악의 역사적 측면, 실연 활동, 전승 활동으로 나눈 후, 여기서 다시 9개의 영역(역사, 지역, 사회·민속 음악, 연회(무용), 놀이·의식, 보유자(단체), 전수교육, 연구활동)으로 세분화하였다. 권소현과 김익한(2010)은 강릉단오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세운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기록을 파악하여 기록화 대상을 7가지(의식, 기·예능보유자, 의식 준비, 전수, 역사기록, 유네스코 기록, 유관사업 기록)로 정리하였다. 정공주와 박주석(2014)은 시각예술 작가의 생애조사(맥락 분석)와 함께 그에 따라 생산될 수 있는 기록물을 작품 활동, 사적활동, 공적활동 기록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록화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무형유산 보유자가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자 전통기술을 실연하는 예술적 실천자이며, 동시에 전승과 대외 활동을 수행하는 공적 전승자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시각예술 작가 개인의 활동을 사적 활동 기록, 작품 활동 기록, 공적 활동 기록으로 구분한 정공주, 박주석(2014)의 논의를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되, 이를 무형유산 전승 맥락에 맞게 조정하였다. 그 결과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은 보유자의 생애 이력, 전승공예품 제작 활동, 전승 및 대외 활동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토대로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 범주

범주	내용	기록물 예시
생애 이력과 관련된 기록	무형유산 보유자의 삶의 배경과 가치관·사상·철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적 기록	출생·가족사, 성장 배경, 입문 계기, 스승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및 문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
전승공예품 제작 활동 기록	보유자의 전승공예품 제작 및 전승 지식 전반을 보여주는 기록물	실연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 및 영상, 사용 도구 및 의복, 작업 결과물 등
전승 및 대외 활동 기록	후속 세대를 위한 전수교육 및 무형유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전승 활동과 관련된 기록	전시 팸플릿/리플릿/포스터, 전수교육 자료, 공개행사 기록, 공문서, 홍보자료, 훈장 및 상장, 신문기사 등

첫째, 생애 이력과 관련된 기록은 무형유산 보유자의 성장 배경과 입문 경위, 개인적 관계 및 철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보유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출생, 가족사, 입문 계기, 스승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범주는 보유자가 어떠한 삶의 궤적을 통해 기능을 체득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전승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전승공예품 제작 활동 기록은 전통기술의 실연과 작품 제작 과정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 제작 과정을 시각적으로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 작업 일지나 스케치, 도면, 제작 도구와 전승공예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기록은 전승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보유자의 전승 지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승 및 대외 활동 기록은 보유자가 전수교육, 공개행사, 학술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형유산의 전승과 사회적 확산에 기여한 활동을 보여준다. 해당 범주는 전승이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의 실천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시 관련 홍보자료, 전수교육 자료, 공개행사 기록, 언론 보도 자료 등의 문서와 시청각 기록들이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무형유산 기록관리 현황

3.1 무형유산 기록관리 관련 정책 및 규정

무형유산에 대한 기록관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제3조를 통해 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어 1964년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 녹음·촬영·악보·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 그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초기부터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있어 기록은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현재, 무형유산의 기록화 및 수집은 법적으로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다. 「무형유산법」 제48조(조사 및 기록화)는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무형유산의 분포와 전승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녹음·촬영·속기 등의 방식으로 기록화할 것을 규정한다. 이를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형유산의 기록화는 제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정수진, 2006).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록화 사업은 “국가유산 실측 기록, 옛도서·옛문서·금석문 등의 원문이미지, 무형유산 기록화, 영상기록, 탁본·영인기록 등 국가유산 원형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기록의 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에서 사용되는 ‘기록화’의 개념은 기록의 생산과 분류·정리·보존·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 생산 단계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김지희, 2018; 설문원, 2010).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을 통해 국가유산 관련 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에 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무형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모두 아우르고 있기에 무형유산에 특화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국가유산 전반에 대한 보호·보존과 그에 따른 업무 및 사업 결과물을 보여주는 기록물을 주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이 수집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을 통해 기관의 소장품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시교육 부서에서 담당한다. 국립무형유산원에 입수되는 소장품은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기증·기탁·이관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 여기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장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장품의 관리·보존은 박물관 자료의 관리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기증·기

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행정기록은 공공기록물로 기록관에 이관되지만, 보유자가 생전에 소장했던 개인기록은 공공기록물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소장품 관리 체계에 따라 수장고에서 보존·관리된다. 이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기록관(공공기록물법 기반)과 수장고(「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기반)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된다(업무 담당자 B). 즉, 국립무형유산원의 보유자 관련 기록은 박물관 기관으로서의 법적 성격에 기반한 독자적 소장품 관리 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형유산의 보존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유산에 대한 기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 11곳에 달한다. 이들은 무형유산의 분포 현황, 전승 실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할 것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기록의 관리·보존·활용에 대한 후속 절차나 책임 주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무형유산 기록관리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면서도, 실제로는 체계적인 관리 구조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유자 개인의 기록이나 전승 과정에서 생산되는 비공식 기록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3.2 무형유산 기록관리 현황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주도 하에 국가무형유산을 영상물 및 책자로 기록하여 보존·전승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1995년부터는 종목별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기록 도서도 함께 발간하기 시작해, 2026년 기준 국가무형유산 163개 종목 중 137개 종목의 기록 영상·도서·사진 제작이 완료되었다. 기록화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은 기록본, 보급본, 서비스본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록본은 편집 및 가공이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원자료(raw data)로, 보유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어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된다. 보급본은 기록본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한 내용 등을 삭제하고, 무형유산 종목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편집한 버전이다. 서비스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해상도·용량 등을 조정하고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재가공한 것이다. 보급본과 서비스본은 이러한 편집 과정을 거쳐 자료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한 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세 가지 버전은 모두 기록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며,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된다(업무 담당자 A).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도무형유산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시·도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전승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록도서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록화 사업을 맡고 있는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공통적으로 기록화 사업은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록화 사업이 외부 기관에 위탁된다는 점에서는 국가유산청과 광역자치단체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기록연구사나 학예연구직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데 비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체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처럼 기록본·보급본·서비스본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용역 업체로부터 USB 안에 완성된 파일을 일괄적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납품받았다(업무담당자 C·D·E·F·G·H). 이에 따라 기록화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완성본(기록도서 및 영상)만이 관리 대상이며, 그 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록물의 인계·인수·보존 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에서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로부터 국가유산과 관련된 소장 기록물을 기증받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공영역인 국가유산 행정기록물과 민간영역의 수집 기록물을 통합하여 ‘국가유산 기록물’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기증받은 기록은 두 차례에 걸쳐 『문화유산 중요기록물 수증목록집』(이상필, 홍재원, 2019;

윤홍로, 문영빈, 2020)으로 발간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과 관련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하여 수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집 체계가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국가유산 기록물’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형유산에 특화된 기록물 수집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유산 중요기록물 수증목록집』(이상필, 홍재원, 2019; 윤홍로, 문영빈, 2020)을 검토한 결과, 수록된 기록물 상당수가 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행정문서와 보고서 또는 유형유산의 도면이나 실측 사진과 필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을 가장 활발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무형유산원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2년부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명예보유자, 작고보유자 등의 전승자와 그 유족들로부터 무형유산 자료를 기증·기탁받았다. 해당 자료는 앞서 언급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의 기여도’, ‘학술 연구 및 전시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수집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선정된 자료는 소장품 등록 절차를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의 수장고에 보관된다. 또한, 보관된 자료의 활용 촉진을 위해 대여, 열람 및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립무형유산원의 수집 대상은 국가무형유산에 한정되고, 시·도무형유산에 대한 기록물 수집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시·도무형유산의 경우, 그 관리 및 기록화의 책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시·도무형유산은 국립무형유산원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이다. 시·도무형유산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유자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국가무형유산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일부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는 반면,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의 기록물은 별도의 수집·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3 현황 분석 결과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동되었다. 특히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 과정을 영상·사진·도서 등의 형태로 제작하는 공공기록물의 생산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기록화 사업을 거쳐 만들어진 기록본·보급본·서비스본은 모두 공공기록물로 분류되어 기록관에 이관되어 관리된다. 그러나 원자료(raw data)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 기록화가 원자료를 일정한 형태로 재가공한 콘텐츠 제작에 가깝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기록학에서 말하는 ‘기록화(documentation)’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원자료에 보유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록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기록이 공공기록관리 체계에 편입되어 관리된다는 점은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기록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시·도무형유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시·도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외부 용역에 위탁되는 방식으로 수행되나, 그 과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산출 기록의 범위와 인계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현행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국가 단위에서는 공공기록물 생산 및 기록관리 체계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기록의 생산·수집·관리 단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편,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수집은 국립무형유산원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관련 자료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명예보유자, 작고보유자 및 그 유족들로부터 기증·기탁받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이 아닌, 박물관 자료로 분류되며, 일정한 평가 기준을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의 소장품으로 등록된다. 이러한 수집 활동은 기본적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단일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집 범위 또한 국가무형유산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지자체에 의한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개인기록 수집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기록화 사업의 구조적 한계(용역 업체에

모든 과정을 위탁, 원자료 누락, 기록관리 체계 미편입)와 맞물려 시·도무형유산 영역의 기록관리 공백과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형유산 기록관리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생산·관리되는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의 전승자인 보유자 개인이 일상적으로 생산·소장·수집해 온 다양한 개인기록의 영역을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공기록 중심의 접근은 행정 절차나 사업 수행, 보유자의 지정·해제와 같은 공적 활동의 흔적은 충실히 담아내지만, 보유자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승 활동까지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개인기록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과는 성격이 다르며, 개인 고유의 경험, 감정, 해석, 인간관계, 일상의 리듬이 기록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있다. Hobbs(2001, 127)는 행정적·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또는 정부기록과 달리, 개인기록을 개인의 행위와 성격, 삶의 사건, 일상적 경험이 문서 형태로 교차하는 장(場)으로 보았다. 즉, 보유자 기록물은 보유자의 공식적 역할이나 기술 활동뿐 아니라,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동기·신념·감정이 작동했는지를 드러낸다. 이는 무형유산의 전승 지식·기술의 체화와 일상적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 행정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고유한 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무형유산 기록관리 체계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적 기록과 보유자 개인이 생산·소장하는 개인 기록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하고,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집·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로는 포착되지 않는 보유자 개인의 경험과 기록 관행을 탐색하기 위해 면담을 통해 보유자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4. 무형유산 보유자의 기록관리 현황

1장에서 밝힌 면담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보유자의 기록관리 인식 및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3가지 영역(보유자의 기록에 대한 인식 및 수준, 기록관리 실태, 기록관리에 필요한 지원)과 5개의 핵심 범주(기록의 의미와 가치, 전승공예품 제작 활동 기록화,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 기록관리의 어려움 및 원인, 기록관리에 필요한 지원)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분석 결과

영역	범주	내용
보유자의 기록에 대한 인식 및 수준	기록의 의미와 가치	- 전승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 - 기록을 무형유산의 후대 전승을 위한 도구로 상정 - 생애사 기록화의 중요성
	전승공예품 제작 활동 기록화	- 실제 제작 및 전승 방식과 기록화 방식 간의 괴리 - 기록이 아닌 개인의 감각적 경험과 기억에 의존 - 완성된 전승공예품을 기록으로 인식 - 제도적 절차나 외부 기관에 종속된 기록화 과정
기록관리 실태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비체계적인 관리 방식 -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의 외부화 - 기록 행위에 대한 자기 인식 부재
	기록관리의 어려움 및 원인	- 전자문서 작성 및 전자기록 관리의 어려움 - 노령화에 따른 현실적 제약 - 기록관리에 필요한 지원 인력의 부재 - 기록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역량
기록관리에 필요한 지원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기관에 대한 요구	- 인력 및 예산 지원 - 기록 활용 촉진

4.1 보유자의 기록에 대한 인식 및 수준

보유자들은 기록이 무형유산의 전승 및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데 의미와 가치를 두었다. 자신이 어떤 계보를 이어받아 그 명맥을 잇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정체성이자 역사적 기록물로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선대 혹은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작 도구와 작업 도안, 사진 등을 전승의 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고 해당 기록은 훼손되지 않게 ‘모셔 놓아야 하는 기록물’로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작 활동에서는 대체로 활용되지 않았다.

더불어 기록의 존재 이유를 후세 전승을 위한 전승 도구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기록은 보유자 개인의 기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자산이라는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보유자들은 기록의 필요성을 전통기술의 보존과 후세 전승을 위한 도구로 보았다. 요컨대 기록을 통해 미래세대가 자신의 기술과 생애를 이해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사라져 가는 기능이다 보니까 기술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먼 후세라도 알게끔 다 정리해 놓는 거죠. 사람은 놔두면 죽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있노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죠. 유형 유산은 (실체가) 있으니까 그대로 기록이 되는데 무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유자 F)

무엇보다 보유자들은 자신의 삶과 전승 과정을 구술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데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생애사 기록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단순한 개인적 이력이 아니라, 전승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내가 간단하게 살아온 과정이나 아니면 전국의 장인들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걸 내 기억 속에 있을 때 책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금 또 없어지잖아요. 내 윗대 분들은 다 아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책을 만들어서 보존해야 되는데... 다 죽어버리면 그런 구술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록화라는 게 대상이 있을 때 기록화가 가능한 거지, 그 대상이 없는데 어디 가서 기록화를 할 거야” (보유자 B)

“우리도 옛날에 저희 스승님 할 때 보면 작업하는 과정이나 그런 영상만 찍고 왔지, 다른 건 기록을 잘 안 남기더라고요. 지금도 촬영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이제 체계적인 일들이 제대로 연구 조사가 잘 돼가지고 기록물로 남으면 좋지.” (보유자 C)

보유자 B의 발화에서 드러나듯, “기억 속에 있을 때”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 기억은 세대 교체와 함께 영원히 사라진다는 위기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보유자 C는 생애사 기록화의 시점을 지적하였다. “나중에 갑자기 급해져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최정점에 있을 때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고령의 보유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기록화하는 시점이 지나치게 늦게 설정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과거 스승 세대의 기록화가 영상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며, 기술의 맥락과 철학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기록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기록화는 대부분 노령화에 따른 기억의 한계, 그리고 기록화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폭넓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전통기술 종목 보유자의 주된 활동은 전승공예품의 제작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승공예품 제작 활동 기록화에 대한 인식 및 수준을 함께 조사하였다. 면담 결과,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 실제 제작 및 전승 방식과 기록화 방식 간의 괴리, ▲ 기록이 아닌 개인의 감각적 경험과 기억에 의존, ▲ 완성된 전승공예품 자체를

기록으로 인식, ▲ 제도적 절차나 외부 기관에 종속된 기록화. 이 네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전통기술 종목의 보유자는 오랜 기간 축적된 신체 감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을 습득해왔다. 이는 전통기술의 전승이 ‘구전심수(口傳心授)’, 즉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익히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온 데서 기인한다. 다음의 진술은 이러한 전승 방식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거는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후손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는 기록을 해봤던 세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디자인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게 현대 스타일이고, 우리 세대는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그냥 막 몸을 깨워가지고 배운 거라서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보고 처음부터 계획서부터 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들고 이걸 해봐라하면 우리는 못해요. 우리 스타일은 그게 아니니까요.” (보유자 B)

전통기술 종목 보유자에게 있어 전승공예품의 제작은 머릿속에 저장된 이미지와 감각적 경험을 실현하는 행위로, 도안이나 스케치 같은 기록은 작업 과정의 필수 요소는 아니었다. 기술 습득 또한 문서화된 절차나 체계적 교육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깨치고’ 익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기술의 본질은 손과 몸을 통해 반복적으로 체화된 것이기에 작업 과정이 기록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제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는 실제 작업 방식과의 괴리를 낳았고, 보유자들은 이를 ‘현대적 방식’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괴리는 보유자들에게 있어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새롭고 낯선 방식의 학습 과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제작 과정을 스스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느꼈다.

또한 보유자들은 작업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기기보다, 오랜 숙련 과정에서 축적된 감각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전통기술의 전승이 문서나 도면을 비롯한 기록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닌, 오랜 기간의 숙달과 반복을 통해 신체에 체화되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보유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손의 기억”으로 정의하며, 이를 말로 설명하거나 기록으로 남기기보다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기술을 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게(=기록) 필요하지 않았던 게, 이제 장인들은 보면 아는 거라. 우리도 지금 보면 아 저거는 석패를 썼고 저거는 야광패구나 아는 거죠.” (보유자 E의 제자)

보유자들은 완성된 작품만 보아도 사용한 재료, 제작 기법, 문양의 의미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이유로 별도로 인벤토리를 작성하거나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여기서 작품 인벤토리는 작품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로 작품의 제목, 재료, 크기, 작품의 보존 상태, 판매 여부 및 가격, 전시 이력, 현재 소장자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김송이, 설문원, 2022, 243). 하지만 작품의 정보는 자신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전통기술은 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위가 기록의 형태로 남지 못한 채, 보유자의 기억, 습관, 손끝의 감각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보유자들의 ‘기록하지 않음’은 기록관리에 대한 무관심 또는 태만이 아니라 오랜 전승 체계 속에서 축적된 문화적 관습으로 볼 수 있다.

일부는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완성된 전승공예품에는 제작 연도를 비롯한 간단한 표식을 남기거나,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첩이나 종이에 메모하는 등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었다.

“작업하는 거 그러가면서 하죠. 매일매일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도 적고 작업 일지 여기 다 있고 기록으로도 적고 그 안에 그동안 작업하면서 실수한 것들도 있고, 이러한 방법들이 매일일도 될 수 있고 그렇죠 ... 사진학도 배웠죠 왜냐하

면 우리 작품을 남겨야 돼요. 본인이 직접 찍고 그거 일지를 만들어요.” (보유자 C)

보유자 C는 제작 과정과 작품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사진 촬영법을 별도로 습득하고, 완성품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일지나 사진 기록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도안과 스케치는 전체 제작 과정과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보유자들의 경험 속에서 기록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어 완성된 전승공예품 자체를 기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록은 그들의 손끝에서 완성된 전승공예품에 구현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 구조는 다음의 진술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옛날에 교수들하고 대화를 하면 선생들은 기록하고 책하고 글을 남기는 거고, 쟁이는 기물을 남기는 게 기록이다, 두 가지 다를 못한다. 그래 이제 기능인은 그 기물을 후손에게 넘겨 주는 거거든요. 물건 만들어가고 후손한테 보이는 거” (보유자 A)

이 발화는 전승공예품 그 자체가 보유자에게 있어 기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손의 기술로 만든 ‘기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지식을 드러내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행위 자체를 기록의 생산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료를 기둥에다가 다 넣어놔요. 그 작품 안에다가 몇 년도 이걸 했고, 얼마에 했고, 인부는 뭐 얼마 썼다라는 걸 그거 다 기록을 해 놔 놓고 이름 써 놓고. ... 예를 들어가 탁자 있으면 이제 조립하기 전에 판자에다가 해놓은 거지. 내가 했는 건 내 흔적을 다 남가놔는데” (보유자 A)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작품이 기록을 담는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업 일지나 도면과 같은 문서 형태의 기록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완성된 작품에 내재화된 흔적으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보유자 A의 경우, 별도로 작업 일지를 남기는 대신 조립 전의 원목 판자에 작업 과정이나 치수 등의 정보를 직접 기록하고, 완성 후에는 이 기록이 작품 구조 안에 봉인되어 작품 자체의 일부가 된다. 이는 보유자에게 있어 기록의 매체가 전승공예품 자체로 확장되어, 그 안에 작품 정보가 함께 담겨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기록이 작품 내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작품을 해제하거나 분해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기록의 존재와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승공예품 제작 활동에 대한 기록은 일상적인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되기보다, 외부 기관의 요구나 행정 절차가 수반될 때만 제한적으로 생성되고 있었다. 즉, 방송 프로그램 출연, 관(官) 주도의 기록화 사업 참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용 자료 등 외부에 의한 제도적 요구가 발생할 때만 제작 과정이 기록되었다.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거는 사실 힘들고, 문화재 시험을 치면 그 과정을 기록해 가지고, 그걸 다 접수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서 기록이 새로 남기고 싶다 하면 촬영을 또 다시 하겠죠. 한 번 해놔 놓으면 그거를 갖고 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계산이 나오죠” (보유자 E)

보유자 E는 보유자 지정 시험이나 기관 주도의 기록화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영상과 사진으로 제작 과정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동일한 과정을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번 공식적으로 촬영·

기록된 자료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유자 개인이 별도의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면담자에게도 확인되었다. 보유자 D는 과거에 참여했던 기록화 사업을 통해 이미 자신과 종목에 관한 기록도서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거는 꼭 기록돼야 돼요”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번 기록화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추가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제작 과정에 대한 기록화가 행정적 사업의 완결을 기준으로 종결되는 구조임을 드러낸다.

4.2 기록관리 실태

앞 절에서 보유자의 기록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기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표 4>에서는 보유자 기록물의 세 가지 범주로 설정하였으나, 면담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범주에 따라 기록이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생산·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록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보유자의 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록관리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과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 비체계적인 관리 방식, ▲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의 외부화, ▲ 기록 행위에 대한 자기 인식 부재가 있다. 보유자의 기록관리 방식은 대체로 기록물을 별도의 체계 없이 개인의 작업 동선과 감각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록을 주제나 연도별로 분류하기보다, 작업 중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노출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했다.

“특별히 분류하고 그런 거는 없고 여기 안에도 보면 어디 막 흩어져 있어요. 눈에 띄어야 쓰지, 안 보이면 안 쓰잖아. 저게 내 뒀에는 정리지.” (보유자 F)

현장 방문 결과, 실제로는 비슷한 성격의 기록끼리 묶어 둔 흔적이 존재했다. 다만 제3자가 볼 때는 어떤 원리로 조직된 질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외부인이 보았을 때는 그 질서 체계가 혼란스러워 보여도 생산자의 질서는 분명히 존재하였다. 이는 보유자 내부에서 작동하는 내적 질서로, 공식적인 분류 체계는 부재하지만 보유자 스스로는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유자 E의 경우처럼, “기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분류나 정리를 하지 않기도 했다. 이들에게 기록은 작업의 부산물일 뿐,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방식은 기록의 물리적 보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체계적 분류와 적절한 보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외부 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자료를 일시적으로 제공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분실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보유자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족·제자·기관 관계자 등 외부인에게 넘기는 경향을 보였다. 그에 따라 보유자 기록물의 실제 관리 주체는 보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제자, 전수교육관 직원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 배경에는 보유자의 고령화에 따른 기록관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기록은 전문가나 후대가 하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걸 여유롭게 정리를 못하는 세대예요. 밑에 세대들이 이걸 해야 돼. 우리는 이제 그럴 여력도 없어, 노인이 되니까” (보유자 B)

“우리 나 많은 사람(=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기가... 이제 이어가려는 자식이 해야지” (보유자 D)

보유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체력적 한계와 세대 교체의 시점을 인식하여, 기록관리를 자신이 아닌 다음 세대의 몫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는 점차 고령의 보유자가 수행하기 힘든 영역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단기적으로는 보유자로 하여금 기록 관리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 주체의 분산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무엇보다 보유자들은 기록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자신이 수행해야 할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록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기록을 남기고 관리해야 한다’는 실천 사이에 괴리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장인의 본분은 기술 전승이며, 기록관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오히려 본업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여겼다.

“지금 남겨놓은 기록이 앞으로 후세에 다른 분들이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겁니다. 그거는 굳이 적어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 기록 자체가 사실 그리 쉽지는 않아요. 일부 기록은 남겼지만... 쟁이들은 일만 하는 거지. 그런 거(=기록관리) 철저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 제대로 안 한다고 봐야지. 일하기 바쁜데” (보유자 E)

“내가 없어지고 나서 내 후대에 갔을 때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필요하겠죠 ... 또 한편으로 그게 굳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보유자 B)

보유자들은 기록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그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의 모순이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장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전승 지식과 기술의 표현이라는 가치관에서 비롯한다. 보유자 E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기록관리는 장인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 가치와는 거리가 먼 행위로 간주되었고,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오히려 제작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둘째, 자신의 기억과 경험이 기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자 B의 진술은 이러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별도의 기록 없이도 기억을 통해 충분히 떠올리고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한편, 일부 보유자들은 외부와의 대화 및 협업을 계기로 기록관리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보유자 F는 기록화 사업에 참여하고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그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유사하게, 보유자 A 또한 과거에는 생계와 작업에 집중하느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보유자로 활동하면서 자료 보존이 ‘보유자’라는 자신의 역할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진술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적절한 환경과 교육이 제공될 경우, 기록관리에 대한 보유자의 인식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기록관리의 어려움 및 원인은 ▲ 전자기록 관리의 어려움, ▲ 노령화에 따른 현실적 제약, ▲ 기록관리에 필요한 지원 인력의 부재, ▲ 기록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역량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관리는 보유자들에게 가장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상당수가 전자적 처리 장치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부는 전자기록을 컴퓨터 내 폴더나 외장하드에 저장하며, 전자기록을 일정 부분 스스로 관리하고 있었다. 덧붙여 전자기록의 불안정성(유실·장치 고장·형식 변화 등)을 인지하여 복사본을 인쇄하여 이중 보관을 유지하기도 했다.

“데이터들은 이제 컴퓨터에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프린트 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보관한다든가... 전수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료들은 구석구석에 다 모아놓고 정리해 놔고 또 중요한 자료들은 이렇게 다 책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보유자 B)

하지만 전자기록이 생산된다하더라도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작 미숙으로 인해, 필요한 자료를 즉각적으로 검색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가 특정 파일을 함께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으나, 폴더 구조나 저장 경로를 떠올리지 못해 끝내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유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전자기록 관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노령화에 따른 체력적 한계로 인해 기록을 물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료가 쌓여 있음에도 정리할 여력이나 체력이 부족하여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관리의 책임을 자녀나 제자에게 넘기기도 하였으나, 이들 역시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관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보유자 A는 문화유산 보수 및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못을 수천 개 이상 수집하여 자료로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각 못의 형태를 구분하고, 복원 대상의 위치나 연대, 건물 정보를 함께 기록하려 했으나, 관리 인력과 공간의 한계로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고려 초기 때부터 못을 다 모아놔고 그게 수천 개 되는데 복원을 하다 보면 남았는 그거죠. 왜냐하면은 이 기둥을 하나 썩어가지고 못 쓰게 됐잖아, 그러면 여기 필요했던 못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 버려진 못들 전부 다 수집한 거죠. 예를 들어가 경상북도 어느 고가 집을 몇 년도에 보수를 했다,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나왔다고 그런 자료 수집을 다 해놔는 거죠. … 활용하려고는 수집한 게 아니죠. 그 자료 남기기 위해서 (수집한 거죠). 남은 보면 아무 쓸모가 없지. 그런데 그게 누군가는 필요한 못이거든. 그걸 이제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정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놔둬버렸지. 나도 그 적어놔는 거 안 보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대충 적어놔는데 쪼가리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보유자 A)

해당 진술은 보유자가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못을 단순한 보수 작업의 잔여물이 아닌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보유자는 이를 전통 목재 구조물의 복원 및 제작과 있어 의미 있는 기록물로 판단하였다. 이는 보유자 스스로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선별·평가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 방식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다. 그는 각 못의 출처나 특징을 종이에 간단하게 메모해 두었으나, 해당 종이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관련 정보 또한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수집된 못의 규모가 방대하여, 비닐하우스를 임시 보관소로 두었다. 이 사례는 체계적 관리 환경의 부재로 기록이 사적으로 축적되고 불안정하게 보존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더불어 기록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의 부재도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보유자 F는 대학이나 문화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물 복원 및 재현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측 사진, 작업 스케치, 재현 도안, 참고문헌 등 연구 성격의 기록을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유자 주변에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게(=기록관리) 힘들어요. 우리 학생 같이 이런 제자가 하나 딱 있으면은 내가 하는 일을 일일이 기록을 하겠지만은 그게 안 돼요. 안 그래도 * * 시에서는 선생님 기록 좀 남기소 필요한데, 내가 그게 되나.” (보유자 F)

무엇보다 보유자들은 ‘기록관리’ 자체를 생소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면담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보유자 선생님들이 다 연세도 많아요... 최근에 이 정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못해요. 아카이빙이 뭔지 단어도 모르지. 오늘 같은 이런 거(=기록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대답이 막히는 게 많은 거야.” (보유자 C의 가족)

이처럼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단순히 생소한 개념에서 오는 혼란을 넘어, 보유자들이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보유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무형유산 분야 전반의 기록관리 교육 및 지원 체계 부족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는 아닌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

4.3 기록관리에 필요한 지원

보유자들은 기록관리를 실천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특히 “혼자서는 어렵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언급이 빈번히 나타났으며, 그 중심에는 기록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상시적·지속적 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들은 특히 전수교육관이나 소속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전제로, 기록관리와 행정 업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희망했다.

“5년 전인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서 예술사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전수관 한 군데 당 한 명을 배치를 시켰어요. 예술사도 매일 근무를 해요. 그런 행정 업무라든가 무형유산들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관리 감독한 청에서도 전문 인력을 키워야 돼요.” (보유자 B)

“체계적으로 누가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수관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있어서 그런 작업을 앞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수요를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좀 해줬으면...전수관에 그 담당이 지원을 해주면 정리 좀 해주고 훼손이 안 되게끔 좋은 그런 데다가 보관을 하면 (좋지)” (보유자 C)

특히 보유자들은 자신이 속한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사나 전담 직원이 기록관리 전반을 함께 담당하는 형태를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였다. 보유자 B와 C가 언급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 이들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교육시설에서 활동하며, 전수교육관 역시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에 의해 2020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되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보유자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은 무형유산 현장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보유자들은 자신이 남긴 기록이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기를 원했다. 자신의 기록을 관련 기관에 기증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때의 기증은 단순히 ‘보관’만 되는 기증이 아니라, 전시·교육·체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증을 의미하고 있었다.

“* * 박물관이 있는데 아버지가 쓰던 연장들 좀 주세요, 이려고 왔는데 거기다가 아버지 공방을 이렇게 하나,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쓰지 못하니 그런 거는 드리는데, 인간문화재 아버님의 이름도 이제 점점 퍼지고, 그래서 좋았지.” (보유자 D)

보유자 D는 기증 후 부친의 유품이 박물관에서 공방으로 재현되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이것이 곧 종목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즉, 기증은 단순히 기록의 이전이 아니라, 자신의 전승 맥락이 공공의 문화적 기억으로 편입되는 과정인 것이다. 한편, 일부는 기증 의사는 있으나 수용기관의 전문성 및 보존 환경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거를 기증했을 때 제대로 활용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활용이 되는 거를 원하지. 말이 수장고지, 창고잖아요.….공예니까 보낸다면 공예박물관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유자 C)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증을 하고 싶어요. 내가 거기 가 가지고 이제 그 공방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래 하면 기증을 하는 거지. 디스플레이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죠. 전통을 계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하는 거지, 덜렁 기증해놓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보유자 A)

해당 진술은 보유자들이 기증하게 되는 기관에 대한 기준을 단순한 ‘보존 능력’이 아닌 ‘기록의 활용’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록 활용을 통해 자신이 속한 종목의 지속성과 사회적 가치가 확장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처럼 보유자들은 기증을 공공성과 활용성의 균형 속에서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었다. 즉, ‘기록이 잘 관리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면 기증할 의사는 충분하지만, 수장고에 보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기증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4.4 면담 결과 정리와 논의

면담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기록의 결락과 단절된 기록의 맥락이다. 보유자들은 자신의 생애와 전승 경험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무형유산은 이를 전승하는 ‘사람’을 매개로 유지되는 유산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보유자의 생애 전체가 기록화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더불어, 이미 존재하는 기록들조차 생산·관리 맥락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문제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없으면 해당 기록이 보유자의 삶과 경험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 부재는 보유자의 삶과 전승 과정 속에서 기록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기록의 특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 역시 개인기록의 범주에 속하며, 기록을 생산한 개인의 삶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 기록화 연구를 수행한 최인혁과 이영학(2015, 72) 역시 개인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적 사건을 기록화할 때 가장 먼저 수행되는 절차가 대상에 대한 분석이듯이, 보유자 기록물 또한 그 기록을 생산한 개인의 생애사를 이해할 때 비로소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보유자의 작품 활동 기록이 주로 단편적이고 결과물 중심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면담 결과 보유자들은 전승공예품 자체를 기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무형유산 기록화 및 예술기록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지희와 이영학(2018, 164-165)은 무형유산 실연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물품 역시 기록으로 보았다. 설문원(2011, 220-221) 역시 예술기록의 특징으로 기록의 유형과 매체의 다양성을 제시하며, 때로는 예술작품 자체가 기록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보유자들이 전승공예품 자체를 기록으로 간주하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으로 작품 하나를 잘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제작 과정의 기록화가 구조적으로 누락되는 문제를 초래

해 전승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전승 지식 및 기술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렇듯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관리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스스로 작품 활동 전 과정을 자연스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공정별 기록 항목을 제시하는 매뉴얼이나 제작 과정 기록을 위한 사진·영상 촬영 보조와 같은 방식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유자들은 기록관리를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기록을 직접 생산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자신의 역할 밖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즉, 기록의 가치와 기록 행위 사이에서 인식의 괴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보유자 스스로가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보존하는 문화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보유자의 기록은 시간이 흐르면 소실되거나 폐기되어 장기적인 보존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보유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록 부재는 전승기술 자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보유자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무형유산 전승자에게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기록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면담 결과, 보유자 개인뿐 아니라 제자, 가족, 전수교육관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가 각기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보유자 기록물의 기록관리에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보유자와 가까이에서 활동을 보조하는 제자나 가족은 일상적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반면, 전수교육관이나 지자체는 대체로 행정적 필요에 따라 일부 행사나 공식적인 전승 활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기록의 흐름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보유자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록관리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각 주체가 생산한 기록을 일정한 기준 아래 공유·연계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유자에 대한 기록관리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유자 기록물은 개인기록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전적으로 기록을 생산한 보유자 개인에게 위임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개인기록의 특성을 연구한 오명진(2017, 93-95) 역시 개인기록의 관리와 활용 방식은 전적으로 개인에 의지하기 때문에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은 개인기록인 동시에 사회 전체에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갖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조치로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 기록이 공적 차원에서의 보존·접근·활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 기준 또한 무형유산 기록을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자 기록물은 개인기록의 특성을 고려하되, 사회적 기록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결 론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전승과 보유자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유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보완하고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구술기록을 통해 결락 기록을 보완한다. 앞선 논의에서 보유자의 생애 이력과 전승 경로, 기술 습득 과정에 대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 생애 기록의 결락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록 생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한 전승 구조가 기록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술기록을 통해 무형유산 기록화에 있어 결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6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고령의 보유자에게 기록관리는 낯선 영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자에게 당장 기록

을 분류하고 정리할 것을 요구하기보다, 기존 무형유산 기록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구술기록을 통해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면담 결과,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생애가 함께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개인의 삶과 경험을 포함한 기록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보유자의 고령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고려했을 때, 그 시급성이 매우 높으므로 구술 채록의 시기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 연령이 약 75세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구술기록의 생산은 ‘언제’ 기록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 즉 시점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명예보유자의 생애를 구술로 기록한 『전승자 구술 자서전』 발간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 현재까지 총 60권이 발간되었다. 이 사업은 보유자의 생애와 전승 활동을 구술 채록하여 이를 서사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도무형유산 보유자는 제외된다. 이때, 각 지자체는 새로운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보유자의 구술채록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작품 제작 공정별 기록화 체계를 마련한다. 면담 결과, 현재의 전승공예품 제작 활동 기록화가 대부분 완성된 결과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제작 과정과 기술 변용의 맥락은 충분히 기록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전승 맥락과 기술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전통기술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 제작 활동에 대한 정교한 기록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무형유산은 환경 변화와 전승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형·재창조되므로 작품 제작과 전수교육 과정에서 기록이 자연스럽게 생산·축적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술의 전승은 구전심수(口傳心授)에 기반해 신체에 체화된 기술·경험·감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비가시적인 영역이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것을 보유자에게 강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기록이 생산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관리·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기록화의 구체적 방식과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① 작품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도안·스케치·메모 등을 완성된 작품과 연계하여 하나의 기록군으로 관리한다. 해당 기록은 작품 제작 전반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자, 보유자의 사고 구조와 제작 의도를 드러낸다. ② 재료의 수급과 가공 과정에 대한 기록화가 필요하다. 무슨 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수급하였고, 해당 재료가 제작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가공 방식은 무엇인지 등이 기록될 수 있도록 전수교육 과정과 연계한 기록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보유자들이 매년 제출하는 전수교육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작성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볼 직하다. ③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작 도구에 대한 체계적 기록화가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르면, 무형유산과 관련된 도구·물품·공예품·문화공간을 모두 무형유산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이 단순한 실연 행위를 넘어, 그 실연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작업 환경 전체를 구성 요소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구의 명칭, 사용 단계, 제작 시기, 제작자, 도구의 손상·보수 이력 등을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④ 완성된 작품별 인벤토리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작품의 전시, 판매, 학술연구, 공예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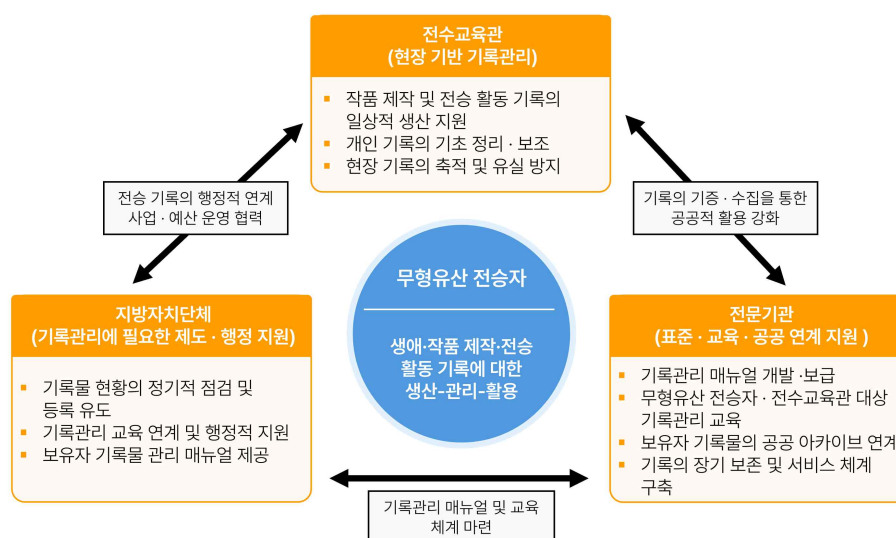
셋째, 무형유산 전승자 대상의 기록관리 교육을 지원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유자들은 기록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록 생산과 관리 행위를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지 않는 인식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더불어 기록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의 한계 역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승 주체가 스스로 기록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 전승자 대상으로 기록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보유자들은 무형유산의 기록화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기록관리를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는 기록관리에 대한 역량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기록의 관리 주체 역시 보유자의 기술을 잇고 있는 가족이나 제자에게 위임된 경우가 많았다. 이때, 이들 개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록이 기록관리기관으로 입수되기 전까지는 그 기록의 생산자이자 관리자이

며 동시에 기증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오명진, 2017, 97). 그러므로 향후 전승의 주체가 될 후속세대가 기록의 가치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록관리 교육 및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후속세대 대상의 기록관리 교육을 정례화하고, 전승자들 간의 기록관리 경험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유자를 포함한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스스로를 기록의 생산자이자 관리자로서 인식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자생적 기록 생산·관리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기록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유자 기록물은 특정 주체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되기도 하지만 보유자 개인을 비롯하여 제자, 가족, 전수교육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록의 생산과 보존, 활용이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지 못하고, 관리의 책임 주체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개별 주체의 노력만으로 보유자 기록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록관리의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단일 기관에 귀속시키기보다, 주체 간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현행 「무형유산법」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에서 “시·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지자체는 2-3명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보유자의 전승 지원 업무와 각종 행정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전문 인력 부재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예연구직이나 기록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는 행정 실무에 밀려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리의 책임을 하나의 기관이나 주체에 단독으로 부과하기보다, 전수교육관-지자체-전문기관 간의 연계형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관리는 특정 개인이나 단일 기관에게 그 책임이 귀속될 것이 아니라, 기록공동체가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하는 공동 과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유자를 비롯한 무형유산 전승자를 중심에 두고 전수교육관-지자체-전문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연계되는 기록관리 모델을 제시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모델

먼저 전수교육관은 보유자의 작업과 전승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보유자 기록물이 일상적으로 생산되는 핵심 거점이다. 그러므로 보유자의 전승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사진, 제작 과정 기록, 교육 자료, 전시 및 홍보 기록 등을 보조적으로 정리·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관과 보유자의 기록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간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자 지정 및 전승 지원 과정에서 개인 기록물 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기록관리 교육을 연계하며, 전승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개인 기록물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국립무형유산원, 국가유산청, 박물관·미술관 등)은 기존에 해오고 있던 국가무형유산의 기록화·구술채록, 보유자 기록물 수집을 병행하되, 좀 더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제도·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와 전수교육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관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록물 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보유자를 비롯한 무형유산 전승자 및 전수교육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교육 및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 기록물이 공공 아카이브로 연계·이관·기증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유자 개인 기록물이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적 자원으로 축적·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보유자 기록물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 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존 및 서비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 기록물의 전자적 등록을 유도하고, 기록물 등록이나 기증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될 때, 보유자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가 일회성 사업이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수교육관의 현장 기반 기록관리 지원, 지자체의 제도적·행정적 조정, 전문기관의 표준·교육·기술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무형유산 보유자 기록물의 관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6.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전통기술 종목 무형유산 보유자의 기록물에 주목하여, 문헌 연구와 심층 면담을 통해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무형유산 기록화 논의가 단일 종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본 연구는 보유자의 삶·기억·전승 활동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무형유산의 핵심 자원으로 보았다. 또한, 면담을 통해 보유자의 기록 생산·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보유자 기록물의 중요성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실증 연구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면담 대상자를 전통기술 종목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무형유산 보유자의 경험과 인식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다. 또한, 5장에서 제시한 기록관리 거버넌스 모델은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모델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석훈 (2024). 전승공동체 종목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방안과 과제. 무형유산, 16, 67-94.

<https://doi.org/10.22956/nihc.2024..16.003>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72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청훈령 제8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국가유산청훈령 제2호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청 (2025). 통계로 보는 국가유산 2025 (11-1833100-100176-10)

-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국립무형유산원예규 제13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 (11-1550011-000382-01)
- 권소현, 김익한 (2010).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173-214.
<https://doi.org/10.20923/KJAS.2010.24.173>
- 김송이, 설문원 (2024). 동시대 미술작가들의 작품활동 기록화 현황과 지원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231-256.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231>
- 김숙연 (2018). 개인기록의 유형과 기록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1: Bricoleur (제3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구 (2025). 국가유산체계 전환과 무형유산정책의 과제. 무형유산학, 10(1), 273-313.
- 김지희 (2018).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전수교육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지희, 이영학 (2018).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전수교육관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56, 147-182.
<https://doi.org/10.20923/KJAS.2018.56.147>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35호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20494호
- 문화재관리국 (1988). 문화재관리연보
-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61호
- 문화재청 (2022).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
- 백주현, 김순희 (2010). 대전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방안 연구. 충청문화연구, 3, 143-174.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https://doi.org/10.20923/KJAS.2010.26.103>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 오명진 (2017).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79-117.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217>
- 위주영 (2006). 무형문화재 기록화와 활용방안 연구: 전남지역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윤지희 (2016). 농악의 실연과 전승 기록화 방안: 필봉마을굿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윤홍로, 문영빈 편 (2020). 문화유산 중요 기록물 수증목록집. 문화재청기록관수집총서, 1. 대전: 문화재청.
- 이상필, 홍재원 편 (2019). 문화유산 중요 기록물 수증목록집. 문화재청기록관수집총서, 1. 대전: 문화재청.
- 이재필 (2010).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의 쟁점과 과제. 인문콘텐츠, 19, 141-158.
- 임예림 (2011).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및 기록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장지영 (2017). 미술작가의 기록 생산과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정공주, 박주석 (2014).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기록학연구, 40, 61-93.
<https://doi.org/10.20923/KJAS.2014.40.061>
- 정다솜 (2019). 광주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판소리 기록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정수진 (2006). 원형의 기록화, 기록의 원형화: 무형문화재의 기록. 한국민속학, 44, 463-490.
- 최인혁, 이영학 (2015).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49-76.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4.049>
- 한혜선 (2023). 무형문화재 옹기장에 대한 기록화의 심화 필요성과 방안. 무형유산, 15, 157-178.
<https://doi.org/10.22956/nihc.2023..15.007>
- 한희정, 두효철, 이영지, 오효정 (2018).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2), 199-224.
- 함한희 (2007). 무형문화유산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전통지식의 보존과 활용. 무형유산아카이브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제학술심포지엄, 11-41.
- Hatch J. Amos. (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진영은 옮김 (2008). (교육 상황에서) 질적연구 수행하기. 서울: 학지사.

- Hobbs, C. (2001). The character of personal archives Reflections on the value of records of individuals. *Archivaria*, 52, 126-135.
- Hsieh, H. F.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ct No. 20835.
- Baek, Ju-Hyun & Kim, Sun-hee (2010). Research on archivization plan for Daejeon metropolitan city-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Journal of Chung Cheong Culture Studies*, 3, 143-174.
- Choi, In Hyeok & Lee, Young Hak (2015). Life history research based private document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4), 49-76.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4.049>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ureau (1988). Annual Report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2). The Second Master Plan for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22-2026).
-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ct No. 961.
- Ham, Han-hee (2007).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e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chives*, 11-41.
- Han, Hui-Jeong, Lee, Young-Ji, Doo, Hyo-Chul, & Oh, Hyo-Jung (2018).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for domes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2), 199-224.
- Han, Hye-sun (2023). A study on the method and necessity to intensify documentation of the Onggija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tangible Heritage*, 15, 157-178. <https://doi.org/10.22956/nihc.2023..15.007>
- Im, Ye-rim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and Inform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Jang, Ji-Young (2017). A Qualitative Study on Record Creation and Use of Artis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
- Jeong, Dasom (2019). A Study on the Recording of Pansori of the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Gwangju. Master's thesis,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rchival Studies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Jung, KongJu & Park, JuSeok (2014). A study on acquisition strategy of records for artists and their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0, 61-93. <https://doi.org/10.20923/KJAS.2014.40.061>
- Jung, Soo-Jin (2006). Recording original forms, record as original forms: On recording projec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Korean Folklore*, 44, 463-490.
- Kang, Seok-Hoon (2024). Methods and tasks for recording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n traditional community.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6, 67-94. <https://doi.org/10.22956/nihc.2024..16.003>
- Kim, Ji-hee & Lee, Young-hak (2018).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metho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raining center.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6, 147-182. <https://doi.org/10.20923/KJAS.2018.56.147>
- Kim, Ji-hee (2018).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Model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raining center.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Kim, Song-yi & Seol, Moon-won (2024). A support plan for the documentation of contemporary artists' work activ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current situ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1), 231-256. [10.14404/JKSARM.2024.24.1.231](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231)

- Kim, Sookyoon (2018). A Study on the Types and Documentation of Personal Record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Yonggoo (2025). Transition of the national heritage regime and challenges in intangible heritage policy.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0(1), 273-313.
- Kim, Young-cheon (2016).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 Bricoleur* (3rd ed.). Seoul: Academy Press.
- Korea Heritage Service (2025). Statistics on National Heritage 2025 (11-1833100-100176-10)
- Kwon, So-Hyun & Kim, Ik-Han (2010).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method of Gangneung Danoj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4), 173-214. <https://doi.org/10.20923/KJAS.2010.24.173>
- Lee, Jae-Phil (2010). The issue and subject of documen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umanities Contents*, 19, 141-158.
- Lee, Sang-pil & Hong, Jae-won (Eds.). (2019). *Catalog of Donated Important Cultural Heritage Record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rchives Collection Series, 1.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National Heritage Basic Act. Act No. 19409.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 *Guidebook for Document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1-1550011-000382-01)
- Oh, Myung Jin (2017). The nature of personal papers and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erson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3, 79-117.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217>
- Regulation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Heritage Archive. Korea Heritage Service Directive No. 2.
- Regulation on the Collection Management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dministrative Rule No. 13.
-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ritage Documentation Projects. Korea Heritage Service Directive No. 8.
- Regulation on the Public Disclosure and Transmission Activities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Korea Heritage Service Public Notice No. 2025-72.
- Seol, Moon-won (2010).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03-149. <https://doi.org/10.20923/KJAS.2010.26.103>
- Seol, Moon-won (2011).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ar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217-247.
- Support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ct. Act No. 20494.
- Wei, ju young (2006). Study on Scheme for Practical Use and Record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Focuses on Craftwork Techniques of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Jeonnam Regions. Master's thesis,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ultural Properties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Yoon, Hong-ro & Mun, Young-bin (Eds.). (2020). *Catalog of Donated Important Cultural Heritage Record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rchives Collection Series, 1.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Yun, Jihui (2016).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of Nongak performance and Transmission: Based on Pilbong Village Gut Festival. Master's thesis,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